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2021년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법령 개선 등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1.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사업 및 그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 용어를 ‘사회복귀 지원’, ‘자립지원’ 등과 같은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2. ○○○○○○○○공단 이사장에게,
 - 가. 청소년의 발달권을 위하여 청소년 입소 생활인들이 외부교육기관(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대안학교 운영 시 교사 또는 청소년지도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위촉, 학습자의 수준별·학령별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시설 및 교재·교구의 구비 등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며,

- 나. 입소 생활인(성인/청소년)의 심리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연계한 나이, 성별, 정서적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기를 권고합니다.
3. ○○○○○○○○공단 이사장 및 사단법인 ○○○ 이사장, 사단법인 ○○○ 이사장, 사단법인 ○○○○○○○○ 이사장, 사단법인 ○○○○ ○○ 이사장에게,
- 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내 CCTV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이동하여 설치하고,
- 나.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인 1실 생활관 운영을 확대하고, 부득이 다인실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방배정 시 입소 생활인의 의사, 연령, 입소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특히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일상생활에서 청소년과 성인 입소 생활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 다. 입소 생활인의 자유로운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진정함 위치를 점검하고, 온라인(인터넷) 진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권리 및 구제절차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표준화하여 보급·비치하고, 입소 시 입소 생활인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를 권고합니다.
4. 사단법인 ○○○ 이사장, 사단법인 ○○○○ 이사장, 사단법인 ○○○○ ○○○○ 이사장, 사단법인 ○○○○○○ 이사장에게, 입소 생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종교활동 참여 여부를 이유로 시설 입소 생활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

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I. 조사 배경

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대상자(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 복귀와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및 취업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으로,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은 공공기관인 ○○○○○○○○공단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법인인 갱생보호시설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 시설과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갱생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제2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8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유엔지침」(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방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1. '갱생보호' 표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부정적 인식 개선

가. 방문조사 결과

○○○○○○○○공단 ○○○○지소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입소 생활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근처에 위치해야 함에도 도심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소극적 처사로 볼 수 있고, 같은 공단 ○○지부와 ○○지부의 경우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설 이전(移轉) 민원을 종종 겪고 있으며, 민간시설인 ○○○○○○협회(○○○ 집, ○○시)도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시설 이전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층면접 조사결과, 시설 입소 생활인 대부분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시설장들은 지역사회에 갱생보호시설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였다.

한편 국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피고용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인정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이 과정에서 피고용자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또는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피고용자가 출소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소자의 취업과 안정적 고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지소와 민간법인 시설인 ○○○(○○)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 생활인들과 거리 청소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은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예전의 명칭인 ○○○○○○○○○공단을 현재의 명칭인 ○○○○○○○○○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2000년대 이후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일체 잔재 표현이며,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¹⁾가 있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갱생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공단은 갱생보호라는 표현 대신에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1) ○○○○○○○○○공단,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연구』 (20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전히 이 법에는 ‘갱생보호’, ‘갱생보호시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지원’, ‘자립지원’ 등과 같은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학습권 등 발달권 보호

가. 방문조사 결과

○○○○○○○○공단 ○○○○지소의 경우, 컴퓨터실에 컴퓨터 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입소 생활인에게 개인용 컴퓨터 등 학습기기를 지급하지 않아 온라인 원격학습 등 학습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 ○○○○지소와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상의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교과과정이 최소한의 형식적 운영에 그쳐 청소년 입소 생활인들의 학업지원에 미흡한 상황이다.

<표 1. ○○○○지소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시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	-----	-----	-----	-----

09:30~11:30	과학 (중·고 통합)	국어 (중·고 통합)	영어 (중·고 통합)	사회 (중·고 통합)
교사	김○○	배○○	김○○	배○○
소지자격	○○학원 연합회 상임부회장	초등학교 1급 정교사	김○○ 영수학원 운영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이수시간	주 2시간	주 2시간	주 2시간	주 2시간

<표 2. ○○○○지소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4:00~16:00	영어 (중·고 통합)	수학 (중·고 통합)	사회 (중·고 통합)	심리상담 (중·고 통합)
교사	김○○	이○○	문○○	조○○
소지자격	정교사 2급	○○학원 강사	정교사 2급	청소년 상담사3급
이수시간	주 2시간	주 2시간	주 2시간	주 2시간

특히, 대안교육 교과과정을 담당하는 외부강사 중 일부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여 청소년 입소 생활인의 학력수준이나 학교급별(중·고)에 의한 실질적 교육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나. 개선방안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제6차 권고(2021. 2.)를 통해 소년원 등 보호대상 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업을 중단해서는 아니 되며, 자기 학력에 맞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소년들의 학습권은 소년원에서의 정규

교과교육, 소년원 밖의 학교로의 통학 보장 등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장하는 등 소년원 학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유엔도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유엔 지침」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에 필요한 교육은 가능한 한 지역 학교의 수용 시설 밖에서 제공하라고 권고²⁾하였다. 민간법인시설 ○○○의 경우, 청소년 입소 생활인이 외부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권고 및 일부 사례와 같이, 청소년 입소 생활인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적학교 또는 외부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교육기관³⁾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공단의 경우 시설 내에서 직접 대안학교를 운영 (○○○○지소, ○○○○지소)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교과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들의 수요와 안정적 사회(학교)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청소년 연령 등 발달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안교과과목의 외부 강사 구성 시 적절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학습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교구 확보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

2) 유엔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지침」

청소년 학습권 보장(자격 있는 교사 지원 등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38. 의무적인 학령기의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한 교육은 가능한 한 지역 학교의 수용 시설 밖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통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석방 후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 교육기관'

련이 필요하다.

3. 심리지원 강화

가. 방문조사 결과

○○○○○○○○공단 5개소(○○○○지부, ○○지부, ○○지부, ○○○○지소, ○○○○지소)의 입소 생활인에 대한 생활인 일과표(성인, 청소년)를 조사한 결과, 자유시간 및 교양시간을 활용한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이 편성·운영되고 있다.

<표 3. ○○○○○○○○○공단 상담프로그램 실시 내역>

시설명	정서·심리안정 프로그램 실시내역
○○ ○○ 지부	- 2021년 2월 개소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집단 심리상담프로그램 (외부강사) 미실시 - 월 1회 월례조회 시 심리상담을 병행 실시하였으나 강제성이 없고 2019년부터 원하는 생활인만 개별 심리상담 진행
○○ 지부	- 2021년 외부강사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성교육프로그램, 자기이해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각 1회 2시간씩 실시 - 개별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미실시, 취업 및 직업훈련 등으로 참여율 저조
○○ 지부	- 알코올 위험성 인지교육 1회 1시간(2021년), 중독위험성 인지교육 1회 1시간(2020년), 중독 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 6회 13시간(2020년) 진행 -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중 퇴소자나 신규 입소자 발생 등으로 프로그램 연속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 코로나로 주기적 개인별 정서·심리상담 미실시(2020년, 2021년)
○○ ○○ 지소	- 청소년과 성인 심리검사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입소 시 1회 실시하였고 심리상담보다 생활고충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확인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외부강사 심리치료 미실시

	- 직업이 있는 성인의 경우 퇴근 후 입소해서 심리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음.
○○ ○○ 지소	- 2020년 실시 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심리프로그램(2회 3시간), 청소년 심리 프로그램(3회 4시간), 진로정체감 형성 프로그램(1회 1시간), 감정코칭 및 문제행동 평가 심리프로그램(2회 2시간) - 2021년 실시 프로그램: 정서인식 심리프로그램(1회 1시간30분), 사회성향상 심리프로그램(1회 1시간), 스트레스 관리 심리프로그램(3회 3시간30분), 진로계획 심리프로그램(1회 1시간) - 2020년에는 외부강사 초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2021년에는 예산부족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외부강사 초빙 프로그램 미실시

○○○○○○○○공단은 <표 3>과 같이 개인별 심리상담보다는 집단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2021년 이후에는 예산 부족 및 코로나 확산 상황을 이유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 마저 중지된 상황으로 확인되었고, 성인 입소 생활인의 경우 취업 및 직업교육으로 인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심리상담 주제 선정에 있어 입소 생활인의 욕구와 수요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대상자의 특성과 상담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월례조회 후 일률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등 형식적 상담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나. 개선방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대면 방식(온라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소 생활인의 특성과 심리상황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취업자 및 직업교육 대상자를 위한 주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또는 정기적인(주, 월 단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입소 생활인의 심리상담은 생활고충 상담이 주를 이루었는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운영 및 나이·성별·정서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공단의 경우 자율형 생활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회성 향상교육(심리상담)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형 생활관도 입소 생활인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심리상담 예산 확보 및 확충이 필요하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가. 조사결과

시설 대부분은 범죄예방과 시설 안전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일부 시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거나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영역을 촬영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특히, ○○○○○○○○○공단 ○○○○지소의 경우, 보호대상 청소년 간의 폭력예방 등을 이유로 생활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촬영하고 있었다.

CCTV 설치·운영 현황은 아래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공단 시설 CCTV 설치 현황>

연번	시설명	설치위치		CCTV 안내표지판	정보활용 동의서	메뉴얼
		공동 공간 (복도, 현관 등)	사적장소 (생활실, 화장실 등)			
1	○○○○지소	19개	12개	○	×	○
2	○○○○지소	7개	5개	○	○	○
3	○○○○지부	31개	0개	×	×	○
4	○○지부	25개	0개	○	○	○
5	○○지부	21개	0개	○	○	○

<표 5. 민간법인 갱생보호시설 CCTV 설치 현황>

연번	시설명	설치위치		CCTV 안내표지판	정보활용 동의서	메뉴얼
		공동 공간 (복도, 현관 등)	사적장소 (생활실, 화장실 등)			
1	○○○	5개	3개	○	○	○
2	○○○○	2개	0개	○	○	×
3	○○○○ ○○○○	3개	0개	○	○	×
4	○○○○○○	1개	0개	○	○	○

나. 개선방안

○○○○○○○○공단 시설 관계자는 입소 생활인 간의 폭력행위 등 범죄예방을 위해 입소 생활인의 동의를 받아 CCTV를 거실 등에 설치·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입소 생활인이 취침하는 생활실은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영역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제2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5. 생활공간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가. 조사결과

○○○○○○○○공단 ○○○○지부 입소 생활인은 거실 배정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수시로 연락을 받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부 입소 생활인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20대와 60대 입소 생활인을 같은 방에 배치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소 입소 청소년 생활인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성인과 잦은 접촉이 있었으며, 입소 청소년 생활인들도 성인과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편 ○○○○○○○○○공단은 거실 배정 과정에서 입소 생활인의 연령이나 보호관찰 여부 등을 고려한다거나 입소 생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개선방안

○○○○○○○○공단 시설은 지속적으로 1인 1실 배치를 위해 시설 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아래 <표 6>과 같이 조사 대상시설 5개소 중 1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설은 다인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다인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자들의 연령이나 생활방식, 보호관찰 여부 등을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1인 1실 생활관으로 운영을 확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입소 생활인의 경우 성인 입소 생활인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생활공간(식당, 회의실, 상담실 등)의 분리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표 6. ○○○○○○○○○공단 조사시설 정원 및 1인실 운영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생활관			1인실 (수)	비고
			정원	현원			
				계	남		
1	○○○○지소	전남 ○○시	28	11	11	-	청소년(남 11), 청소년 교육센터 (대안학교)
2	○○○○지소	광주광역시 ○구	11	9	9	3	여성전용시설 (성인, 청소년)
3	○○○○지부	서울특별시 ○○구	40	4	4	-	신설(2021. 3.), 여성전용시설
4	○○지부	인천광역시 ○구	33	27	27	-	기술교육원(용접)
5	○○지부	울산광역시 ○구	29	25	25	-	기술교육원(용접)
소계			141	76	63	13	3

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가. 조사결과

시설 입소 시 입소 생활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 고지 및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권리고지의 내용이 시설별로 상이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입소과정에서 권리고지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해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단 ○○○○지소의 경우 CCTV가 설치된 1층 사무실 문 앞에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어 입소 생활인들의 진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나. 개선방안

○○○○○○○○○공단이 입소 생활인의 권리 고지 안내(표준 권리 안내서)와 같은 자료를 통일적으로 작성·배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권 보호를 강화해 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의 설치 장소 및 표시, 잠금장치 및 관리, 진정용지·필기도구·봉합용 봉투 등 진정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며, 인터넷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진정·민원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온라인 환경(진정신청이 가능한 컴퓨터 설치 및 각 생활실별 와이파이 설치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7. 종교의 자유 보호

가. 조사결과

○○○○○○○○공단 시설의 경우 입소 생활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이나 강요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민간법인 시설의 경우도 형식상으로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직접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설립의 취지가 반영된 운영으로 인해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협회의 경우⁴⁾ 생활수칙에 종교의 자유 보장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입소 생활인 전체가 단체로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종교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개선방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법인 시설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바, 입소 생활인이 다른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서는 종교활동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활동 여부를 이유로 갱생 보호와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

4) 시설 생활인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00~14:00까지 서울 ○○구 소재 ○○교회에 단체로 이동하여 예배 참석

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7.

위원장 송 두 환

위원 이 상 철

위원 박 찬 운

위원 남 규 선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종교의 자유)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사회보장)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 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4.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유엔 지침

◆ 청소년 학습권 보장(자격있는 교사 지원 등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38. 의무적인 학령기의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한 교육은 가능한 한 지역 학교의 수용 시설 밖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통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석방 후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